

「구미시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」

검 토 보 고 서

1. 발 의 자: 김근한 의원 외 21명

2. 제안이유

○ 구미시 생활체육지도자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개선 및 복리후생 증진의 기반을 조성하여,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통한 시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조례의 목적과 정의,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(안 제1조~제3조)
-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(안 제5조)
-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및 처우개선 사업에 관한 사항(안 제6조)
-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을 위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(안 제7조)

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
 - 「국민체육진흥법」 제2조, 제16조의2, 제33조의2, 제34조
 - 「생활체육진흥법」 제1조, 제2조, 제6조

5. 검토의견

○ 본 조례안은

- 구미시 생활체육지도자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해 제출된 안으로,

○ 검토 결과,

- 생활체육활동지도자에 대한 처우개선 및 복리증진을 통해 생활체육 활성화와 시민 건강증진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보임.
- 현재 상위법령인 「국민체육진흥법」 및 「생활체육진흥법」에서 스포츠클럽과 체육지도자에 대한 지원·육성근거가 마련되어 있으나 도내 최초 조례제정을 통해 우리시 여건을 반영한 지원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조례의 제정 취지는 바람직한 것으로 보여짐.
- 집행기관에서는 구미시 생활체육지도자에 대한 정확한 근로여건을 파악하여, 근로시간 등에 따른 적절하고 형평성 있는 재정지원 기준 마련 등 관련 사항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.